

Ericsson 공급업체 직장 보건/안전 (특별)

Standard



목차

1	소개	3
2	직장 보건/안전 관리	3
2.1	일반 OHS 관리 요건	3
2.2	현장별 요건	4
2.2.1	책임과 권한, PICW	4
2.2.2	경험과 지식, PICW	4
3	OHS 사고 보고 및 조사	4
4	안전 계획	5
5	하청업체 관리	5
6	위험 관리	6
7	교육 및 역량	6
8	장비 안전	6
9	변경 사항	7

© Ericsson AB 2021

All rights reserved. 본 문서의 정보는 Ericsson 의 소유물이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Ericsson 은 사실상 부정확한 내용이나 철자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

1 소개

Ericsson 일반 공급업체 OHS 기준과 별도로, 본 특정 작업장 보건/안전(OHS) 기준은 건설, 현장 관리, 네트워크 롤아웃 서비스 공급업체, 그리고 이 문서가 계약상 구속력을 갖는 기타 모든 공급업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 이 기준은 기타 모든 공급업체의 경우 권장사항입니다.

2 직장 보건/안전 관리

2.1 일반 OHS 관리 요건

공급업체는 자비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.

- 모든 OHS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단일 연락 창구로 고위 담당자를 지명해야 합니다.
- 공급업체 조직 전체의 OHS 제공과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.
- 직원, 공급업체, 하도급업체, 기타 제삼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OHS 위험을 파악/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 할당과 더불어 적절한 OHS 관리 조치 및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.
- Ericsson 과의 OHS 약정(OHS 계획일 수도 있음)에 협력해야 합니다. 공급업체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합의된 OHS 약정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직원, 하도급업체, 공급업체의 OHS 교육 필요를 평가하고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자사 직원, Ericsson 직원, 제삼자의 생명이나 심각한 부상과 관련된 임박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, 위험 평가 및 PPE 검사 프로세스의 모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관련 작업 및/또는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.
- Ericsson 이 요구하는 OHS 관리 검토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. Ericsson 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건/안전 규정 준수, 역량, 자원에 대한 OHS 감사에 항상 참가하여 Ericsson (Ericsson 의 고객이 참가할 수도 있음)과 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.
- OHS 성과가 검사, 테스트, 감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/검토되도록 하고 요청하는 경우 OHS 데이터를 Ericsson 에 제공해야 합니다.



2.2 현장별 요건

서비스 제공업체는 각각의 야외 현장 또는 지정된 작업 공간에 대해 고위 담당자인 작업 책임자(PICW)를 지정해야 합니다.

2.2.1 책임과 권한, PICW

- 현장 또는 지정된 작업 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을 보장합니다.
- Ericsson 의 OHS 요건을 준수합니다.
- 현장의 모든 직원과 방문자로 하여금 필수 신규 교육을 받게 합니다.
-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.
- 필수 OHS 현장 문서 기록의 이용 가능성과 완전성을 보장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.

2.2.2 경험과 지식, PICW

- 적절하고 충분한 OHS 지식과 경험
- 구체적인 작업 및 관련 위험 요인, 위험, 필수 통제 조치에 대한 이해
- 관련 OHS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지식

3 OHS 사고 보고 및 조사

공급업체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.

- 사고와 위기 일발 상황의 보고, 기록, 조사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모든 주요 사건(사망, 중상, 심각한 건강 질환, 위험한 사건) 또는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었던 위기 일발 상황은 [Ericsson 의 글로벌 OHS 사고 보고 틀](#)을 이용해 24 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.
- 공급업체는 모든 주요 사건의 조사에서 Ericsson 에 협력/지원해야 합니다.
- 주요 사건 및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는 Ericsson 과 공유됩니다(공급업체는 이러한 정보가 Ericsson 그룹사, Ericsson 의 고객과 공유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).



4

안전 계획

공급업체는 모든 건설 및 고위험 프로젝트를 위한 안전 계획을 수립/시행하고, 작업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.

다음은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목록입니다.

- 수행할 작업의 범위
- 핵심 연락 담당자, OHS 이행 책임(OHS 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자격, 역량, 경험 포함)
- 6 장에 명시된 위험 평가 및 완화
- 7 장에 명시된 교육 및 역량 조항
- 공급업체가 요구되는 기준을 달성하고 동의한 바에 따라 Ericsson 에 OHS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모니터링, 감사, 검사, 인증, 보고 프로세스에 관한 세부 정보
- 공급업체의 사고 보고 및 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
- 기준의 전달을 포함해 하청업체를 선택/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정보(5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함)
- 작업 이행 전반에 걸쳐 고위험 물질을 선택, 사용,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정보
- 공급업체 비상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
- Ericsson 과 공급업체 간의 관리 프로세스에 관해 기타 필요한 세부 정보

5

하청업체 관리

공급업체는 자신의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,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.

- 하청업체의 OHS 능력이 Ericsson 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
- 공급업체의 의무를 자신의 하청업체에 반영, 적용하는 계약
- 적절한 경우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성과 관리 메커니즘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
- 하도급업체와 소통하고 Ericsson OHS 정책 및 지침에 비추어 하도급업체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



- 자신의 하도급업체의 OHS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

6 위험 관리

공급업체는 자신의 작업 범위와 관련된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.

- 작업 범위와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, OHS 위험 평가에 관한 업계 모범 사례를 이용하거나 OHS 법규/규정에 따라 관련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.
- 위험을 제거/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.
-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통제 조치를 전달해야 합니다.
- 그러한 통제 조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

7 교육 및 역량

최소한 공급업체는 자신의 직원 및 하도급업체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.

- Ericsson 을 위해 또는 Ericsson 을 대리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지정된 작업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.
- 교육은 고위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. 즉, 대상 청증을 위해 적절한 언어로, 적절한 수단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.
- 고위험 작업(예: 고소 작업, 전기 작업, 운전)은 교육을 받은 능숙한 자격자만 수행해야 합니다.
- 언제든지 Ericsson 이 검사할 수 있도록 교육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.

8 장비 안전

공급업체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.

- 모든 장비(예: 크레인, 기계식 리프팅 장치, 체인, 로프 등)는 제조업체 권장 사항에 따라 검사, 테스트, 유지보수, 인증되어야 합니다.
- 모든 장비 개조는 제조업체 권장 사항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- 모든 플랜트 및 장비는 본래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, 제조업체 권장 사항에 따라 유지보수되고, 사용 전에 검사/점검해야 하며, 작동 권한이 있는 사람만 사용해야 합니다.



- 사고 조사 방법이 문서화되어야 하며, 장비 결함 또는 고장을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장비의 사용, 유지보수, 보관, 폐기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와 지침을 입수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.

9

변경 사항

개정판 B 이후의 변경 사항:

- 이 문서의 업데이트는 새로운 Ericsson 브랜딩 요건으로 제한되며,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.